



#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청년층





## “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http://www.mohw.go.kr)), 복지포([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 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교육지원

|                                  |    |
|----------------------------------|----|
| 01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 04 |
| 02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 05 |
| 03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 06 |
| 04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 07 |
| 05 국가 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포함)   | 08 |
| 06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 09 |
| 07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 유형)    | 10 |
| 08 인문100년장학금                     | 11 |

## 교육 대출

|                      |    |
|----------------------|----|
| 0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12 |
| 10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13 |
| 1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 14 |

## 고용지원

|                     |    |
|---------------------|----|
| 12 국민취업지원제도         | 15 |
| 13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16 |
| 14 청년희망키움통장         | 18 |
| 15 청년저축계좌           | 19 |
| 16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20 |
| 17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21 |
| 18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     | 22 |
| 19 국가기간 · 전략산업 직종훈련 | 23 |
| 20 일학습병행제           | 24 |
| 21 청년내일채움공제         | 25 |
| 22 해외취업 지원          | 26 |
| 23 내일이룸학교           | 28 |

## 주거지원

|                                        |    |
|----------------------------------------|----|
| 24 행복주택 공급                             | 30 |
| 25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br>매입임대주택 지원 | 33 |
| 26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br>전세임대 지원   | 35 |

## 주거 대출

|                               |    |
|-------------------------------|----|
| 27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 37 |
| 28 보금자리론                      | 38 |
| 29 버팀목 대출 보증                  | 38 |
| 30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 39 |
| 31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 40 |
| 32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41 |
| 33 전세자금 보증                    | 41 |

## 생활지원

|                     |    |
|---------------------|----|
| 34 긴급복지 지원제도        | 42 |
| 35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44 |
| 36 여성긴급전화 1366      | 45 |

## 건강지원

|                  |    |
|------------------|----|
| 37 건강보험제도        | 46 |
| 38 국가건강검진제도      | 47 |
| 39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49 |
| 40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 50 |

## 법률·금융 지원

|                    |    |
|--------------------|----|
| 41 법률구조 제도         | 51 |
| 42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 53 |
| 4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 54 |
| 4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55 |

## 국방

|                 |    |
|-----------------|----|
| 45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56 |
|-----------------|----|

# 01

## 교육지원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 1. 대상

-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자 중 해외대학 입학 희망하는 저소득층(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성적 우수 학생
- 2022년 2월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 선발인원 30명 내외 (고2 50% 선발, 고3 50%내외,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5명 이내 선발)
- 학생 온라인 신청자(교육청 추천자 포함)
-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학기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고3)/ 12단위(고2) 이상

### 2.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유학준비생<br>(국내장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서류, 인적성 검사, 면접)된 학생</li> <li>■ 지원내역 : 학업정려비 지원(고2 : 월 50만 원, 고3 : 월 70만 원)</li> <li>■ 지원기간 : 선발 익월부터 고교 졸업 시(2월 말)까지 지원</li> <li>■ 지급절차 : 월별 학업보고서 제출 → 학업 보고서 심사 및 승인 → 학생계좌로 개별 지급</li> </ul>                 |
| 유학생<br>(해외장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유학준비생(국내장학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하여 유학생으로 전환 선발(별도 심의 통과자)된 자<br/>※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학생 유형으로 전환여부 결정</li> <li>■ 지원내역 : 연간 최대 6만 USD(학비+체재비), 항공료 별도<br/>※ 세부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li> <li>■ 지원기간 : 입학 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li> </ul> |

### 3. 방법

교육청 추천 받은 학생 또는 직접 신청자 모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4.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02

## 교육지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 유형)

### 1. 대상

-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현재 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 일부 전문학사 취득자 지원 가능

| 세부요건   | 세부내용                |
|--------|---------------------|
| 지원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
| 재직경력   | 심사일 기준 2년 이상 재직     |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

#### ■ 우선지원 대상

-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아래 항목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 구분 | 연령  | 출신고교 | 재직기관 | 재직기간 |
|----|-----|------|------|------|
| 배점 | 30점 | 30점  | 30점  | 10점  |

### 2. 내용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재직자 : 등록금 50% 지원  
※ (계속장학생) 수혜 횟수 내에서 졸업까지 계속 지원  
※ 매학기 지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4. 문의

한국장학재단 ☎1800-0499,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03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 1. 대상

| 구분                 | 지원대상                                                          |
|--------------------|---------------------------------------------------------------|
| 국가장학금 I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 국가장학금 II유형         | II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                         |
| 다자녀장학금<br>(세자녀 이상)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br>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미혼에 한함) |

※ I 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은 성적(B<sup>+</sup>)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C<sup>+</sup> 이상 적용, 학자금지원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 2. 내용

- I 유형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차등지원

<2021년 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지급금액>

(단위 : 만 원)

| 지원구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 지급액  | 520    | 520 | 520 | 520 | 390 | 368 | 368 | 120 | 67.5 |

- II유형 :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
- 다자녀(세자녀 이상)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 지원 (단, 기초~3구간은 연간 520만 원 지원)

###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 알려드립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04

교육지원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 1. 대상

- 대통령과학장학금 : 당해 연도 국내 및 해외 대학(4년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예정(확정)인 자 또는 국내 대학 3학년 재학 중인 자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당해 연도 국내 대학(4년제)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입학 예정(확정) 또는 3학년 재학 중인 자

### 2. 내용

| 구분             |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
| 지원<br>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금(등록금 전액)</li> <li>- 학업장려비(학기당 250만 원)</li> <li>-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 원)</li> </ul> </li> <li>■ 해외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5만 USD 내에서 학비, 체재비 지원</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장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금(등록금 전액)</li> <li>-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학기당 250만 원)</li> </ul> </li> </ul> |
| 지원<br>기간       |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br>(정규 8학기)<br>※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지원                                                                                                                                                                                                                                                                                             | 장학생 선정 후 최대 4년 지원<br>(정규 8학기)<br>※ 5년제 학과 최대 10학기 지원<br>※ 3학년 선발자는 최대 2년<br>(정규 4학기) 지원                                                                                                   |
| 계속<br>지원<br>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 : 87점 이상/100점 (B<sup>+</sup> 수준)</li> <li>■ 최소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li> </ul>                                                                                                                                                                                                                        |                                                                                                                                                                                           |

###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

# 05

교육지원

## 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포함)

1. 대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 C<sup>o</sup>학점 수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기준 미적용
2.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 지급  
■ 시급단가 :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만 1,500원  
■ 주당 근로시간 : 학기 중 20시간(단, 방학 중 40시간 가능),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농어촌지역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중에도 주당 40시간까지 근로가능  
※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제외한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06

교육지원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1. 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학과(부) 1,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전공탐색(I, II)유형'과 3학년 '전공확립(I,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2.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I<br>유형  |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 (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
|          | 생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지원 : 학기 당 200만 원(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21년 2학기부터 92점 이상) 충족 시)</li> <li>■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00만 원</li> <li>※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li> </ul> |
| II<br>유형 |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 (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
|          | 생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00만 원</li> <li>※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li> </ul>                                                                            |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07

## 교육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 유형)

- 1. 대상**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학부\* 재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성적기준)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2.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 취·창업<br>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단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는<br>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800-0499,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08

## 교육지원 인문100년장학금

**1. 대상**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전공탐색(I, II)유형'과 3학년 '전공확립(I,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 2.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I<br>유형  | 등록금<br>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br>(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
|          | 생활비<br>■ 공통지원 : 학기 당 200만 원(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0점 이상<br>('21년 2학기부터 92점 이상) 충족 시<br>■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00만 원<br>※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
| II<br>유형 | 등록금<br>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br>(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
|          | 생활비<br>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00만 원<br>※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교육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1. 대상**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과 장애인인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이며, 만 35세 이하인 학부생
    - ※ 다자녀(세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 장년층의 재교육 및 계속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전문대 계약학과(‘재용조건형’에 한함)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만 45세까지 대출 가능
    -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
-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연 1.7%(변동금리)로 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4.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학자금대출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이 경감됩니다.  
(2020년 2학기 1.85% ⇒ 2021년 1.7%)



## 교육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1.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과 장애인인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생(5구간 이상), 대학원생(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 단, 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 가능(만 55세 이전 등록 및 재학 이력이 있어야 하며, 만 56세 이상 신입생은 대출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2. 내용**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연간 300만 원 한도(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연 1.7%(고정금리)로 대출  
※ 단,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000만 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000만 원  
\*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000만 원
-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4.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알려드립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 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 1. 대상

- 학부모 또는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
  -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졸업 학년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순위  | 지원대상                                                                                                                                                              | 학자금지원구간 |
|-----|-------------------------------------------------------------------------------------------------------------------------------------------------------------------|---------|
| 1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li> <li>■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li> <li>■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li> </ul> | 제한없음    |
| 2순위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8구간 이하  |
| 3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li> <li>-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li> </ul>                                            | 제한없음    |
| 4순위 | ■ 특별생인가자                                                                                                                                                          | -       |

**2. 내용**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전액 무이자 대출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자주 하는 질문

**농촌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이제한이 있나요?**

농촌학자금융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이면 됩니다.

**농촌학자금융자는 생활비 대출은 없나요?**

농촌학자금융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 대출로만 이용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고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1. 대상

| 필요요건     |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경험                   |
|----------|-------|--------|-----------------------|--------|------------------------|
| I<br>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50% ↓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 선발형   | 청년     | 18~34세<br>중위소득 120% ↓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       | 비경활    | 15~69세<br>중위소득 50% ↓  |        |                        |
| II<br>유형 | 저소득   | 15~69세 | 중위소득 60% ↓            | -      | -                      |
|          | 특정계층  |        | -                     |        |                        |
|          | 청년    |        | -                     |        |                        |
|          | 중장년   |        | 중위소득 100% ↓           |        |                        |

**2.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지원                                                                                          |
|----------|------------------------------------------------------------------------------------------------------------------------------------------------------------------------------------------------|------------------------------------------------------------------------------------------------|
| I<br>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층상담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li> <li>■ 취업지원 :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지원, 구직 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li> </ul>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br>(월 50만 원 x 6개월)                                                            |
| II<br>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li> <li>■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li> <li>■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li> </ul>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6개월)<br>* 1단계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br>(월 28.4만 원 x 6개월) |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http://www.work.go.kr/kua))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자인 중 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등

## 2. 내용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 구분               |                         | 훈련비 지원율                           |
|------------------|-------------------------|-----------------------------------|
| 일반실업자 등          |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II 유형 중 청·중장년층          | 훈련비의 50~85% 지원                    |
|                  | I 유형 및 II 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 훈련비의 72.5~92.5% 지원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 훈련비 전액 지원<br>※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 (월 최대 11만 6,000원 지급)

## 3.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http://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알려드립니다

아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 월 평균 소득액이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4

## 고용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1. 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2.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예시

3년 간 평균 1,789만 원, 최대 2,369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15

## 고용지원 청년저축계좌

**1. 대상** 일하는 만 15~39세 미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2. 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 장려금 지급요건: ①꾸준한 근로, ②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지원예시

■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월 40만 원  
→ 3년간 약 1,44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용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1. 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 2.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3. 방법**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면접심사 → 최종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4.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www.wesc.or.kr](http://www.wesc.or.kr))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http://www.wbiz.or.kr))



고용지원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1. 대상**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2. 내용**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 및 정부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3. 방법**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http://www.smp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조사 및 비대면조사도 진행 가능
    - ※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만료) 등은 서면조사 진행,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등은 비대면조사 진행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 4.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32, [www.wbiz.or.kr](http://www.wbiz.or.kr))

# 18

## 고용지원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

**1. 대상** 국내 소재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기술창업,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소셜벤처)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을 준비중 또는 기 창업한 자

※ 저소득층 대학생 우대

**2. 내용** 주거 및 창업 공간 제공, 창업지원 프로그램 무상지원

■ (기숙사현황) 전국 5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99명 수용

| 구분 | 서울센터             | 부산센터          | 대구센터          | 광주센터         | 대전센터         |
|----|------------------|---------------|---------------|--------------|--------------|
| 위치 | 중구 장충동1가 (동대입구역) | 연제구 연산동 (연산역) |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 | 서구 농성동 (농성역) | 중구 용두동 (오룡역) |
| 정원 | 53명              | 47명           | 37명           | 33명          | 29명          |

■ (지원내용) 주거 및 창업공간 제공, 창업지원 프로그램 무상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 공간 지원 | 주거공간 : 사생실, 세탁실, 공용주방 등 무상지원<br>창업공간 : 임대형사무실, 세미나실, 코워킹스페이스 등 무상지원                     |
| 창업 지원 | 창업자문 : 입주생과 전담 자문위원을 매칭하여 창업 전반에 대한 자문 지원 (월 1회 이상)                                     |
|       | 창업교육 :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단계 및 분야별 교육                                                        |
|       | 네트워킹 : 입주민별 정보교류 및 관계형성활동 지원, 기창업자 특강 등 운영<br>창업경진대회 : 창업활동에 대한 자체점검 및 창업 우수인재 발굴 기회 제공 |

- 3. 방법**
- 모집시기
    - 상반기모집 : 매년 12월 중 차년도 입학생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차년도 2월 중 입주
    - 하반기모집 : 공실 발생 시 추가모집 실시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 19

## 고용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1. 대상**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전학예정 고3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 등

**2. 내용**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만 6,000천 원 지급)

**3.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http://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지원 일학습병행제

1. 대상
  - 학습기업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면서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학습근로자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등 취업희망자 및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2. 내용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학습기업에게 현장훈련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현장훈련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3. 방법
  - 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학습근로자 :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http://www.hrd.go.kr)) 및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가능
4.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고용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만 15~34세의 청년

※ 5인 이상 기업 가입 가능(벤처기업 등 일부 제외),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자세한 가입 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또는 고객상담센터 문의 요망
2. 내용
 

청년(근로자)이 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 (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고, 기업에서 300만 원(정부지원),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 원을 각각 적립해\* 1,200만원(+이자)의 목돈 지원

\* 정규직 취업 후 1·6·12·18·24개월, 총 5회 적립
3.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참여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자격확인 → 청년공제 청약 신청 및 가입\*([www.sbcplan.or.kr](http://www.sbcplan.or.kr))

→ 공제금 적립 → 만기금 지급(1,200만 원+이자)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2번, 5번)



## 고용지원 해외취업 지원

### 1. 대상

| 사업명             | 지원대상                                                                                                                      |
|-----------------|---------------------------------------------------------------------------------------------------------------------------|
| K-Move 스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4세 이하 해외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미취업자.</li> <li>사업참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력재학생(휴학생 참여불가)</li> </ul> |
| 민간해외취업<br>알선지원금 | 만 34세 이하 취업 비자를 취득한 연봉 2,400만 원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690명)                                                              |
| 해외취업<br>정착지원금   | 만 34세 이하로 가구 소득 6분위 이하 (3,960명 : 선진국 2,700명, 신흥국 1,260명)<br>※ 단순노무직 배제                                                    |
| 해외취업알선          |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 2. 내용

| 사업명             | 지원내용                                                                                                                                                                                                                                                                                                                          |
|-----------------|-------------------------------------------------------------------------------------------------------------------------------------------------------------------------------------------------------------------------------------------------------------------------------------------------------------------------------|
| K-Move 스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1년간 구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li> <li>교육비, 취업지원 등을 포함해 1인당 단기 580만 원, 장기 800만 원, 트랙2 1,350만 원 한도 내 지원 (과정에 따라 20% 범위에서 자부담)</li> </ul>                                                                                                                                                |
| 민간해외취업<br>알선지원금 | 연봉에 따라 직업소개요금 지원(200만~300만 원)<br>※ 취업자에게 추가로 소개요금 청구 불가                                                                                                                                                                                                                                                                       |
| 해외취업<br>정착지원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우대국가* : 취업 1개월 후 300만 원, 취업 6개월 후 100만 원, 취업 12개월 후 200만 원 지원</li> <li>그 외 국가 : 취업 1개월 후 200만 원, 취업 6개월 후 100만 원, 취업 12개월 후 100만 원 지원</li> <li>※ 19년 지원금 우대국가로 편입된 싱가포르 취업자는 19년 취업자부터 우대금 적용</li> <li>* 지원금 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국가)</li> </ul> |
| 해외취업알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li> <li>※ 서울 해외취업센터, 부산 해외취업센터</li> </ul>                                                                                                                                                                                                                        |

### 3. 방법

| 사업명             | 신청방법                                                                                                                                                                                                                          |
|-----------------|-------------------------------------------------------------------------------------------------------------------------------------------------------------------------------------------------------------------------------|
| K-Move 스쿨       | 월드잡플러스( <a href="http://www.worldjob.or.kr">www.worldjob.or.kr</a>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이력서 작성, 저장 및 공개 설정) → 지원내용선택(희망연수과정 선택) → 지원방법(지원하기 클릭)                                                                                     |
| 민간해외취업<br>알선지원금 | 참가기관 모집(참가기관 신청서 제출) → 구인등록 및 구직자 모집 → 취업알선 실시 및 사업 모니터링 → 취업알선지원금 청구(지원금 청구 및 취업 증빙서류 제출)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
| 해외취업<br>정착지원금   | 월드잡플러스( <a href="http://www.worldjob.or.kr">www.worldjob.or.kr</a> ) 회원가입(구직회원 등록) → 취업 성공(취업인정기준 부합) → 1차 장려금 신청(취업기간 1개월 후) → 2차 장려금 신청(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후) → 3차 장려금 신청 (최초 취업일 12개월 후)                                      |
| 해외취업알선          | 구직자 구직등록·구인요청(구인신청서) 접수( <a href="http://www.worldjob.or.kr">www.worldjob.or.kr</a> ) → 재외공관에 구인요청 사실 확인(취업비자 적법성, 업체 진위 여부 등) → 구직자 모집 선발 → 기본상담(구직자 해외취업 역량진단 및 컨설팅) → 취업지원(알선) → 서류심사, 면접, 합격 결정 → 근로계약 체결 → 비자 발급 등 출국 지원 |

### 4.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 자주 하는 질문

####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의 사업내용과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스쿨)은 국내 외 우수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 등이 연수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선(先) 발굴한 후 해외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과정 종료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http://www.worldjob.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연수생을 모집 중인 과정을 검색하실 수 있으며 희망하시는 연수과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기관의 정원규모에 따라 모집이 조기마감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연수생 선발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취업정보와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http://www.worldjob.or.kr))에서 해외진출(취업, 창업, 인턴 등)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취업을 위한 각 국가의 구인정보, 비자, 유망직종, 취업 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서울,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취업 센터를 통해 해외취업상담 및 알선, 해외취업아카데미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 내일이룸학교

- 1. 대상**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2.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 전문직업훈련, 무료기숙사 제공(훈련기관에 따라 제공 여부 상이)  
※ 기숙사 미제공 시 교통비 및 중식비 월 최대 16만 원 지원
  - 훈련생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자립장려금 지원
  - 검정고시, 예·체능 활동, 심리상담 등 훈련생 학력취득 및 특기적성 개발 지원
- 3. 방법**
  -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청소년지원센터 굚드림 문의 후 우선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 4. 문의**
  - 오프라인 및 우선문의
    - 한국생산성본부(☎02-398-7632, www.kpc.or.kr)
    - 청소년지원센터 굚드림(www.kdream.or.kr)
  - 온라인 문의 : 정부24(www.gov.kr)

### 알려드립니다

#### 2021년 함께하는 '내일이룸학교' 현황

| 구 분 | 기관명                 | 훈련과정                     |
|-----|---------------------|--------------------------|
| 서울  |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        | 그래픽영상편집과 스마트마케팅 실무자 양성과정 |
|     | (재)서울현대교육재단         | 플라워디자이너 양성과정             |
|     |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 기계가공조립전문가 양성과정           |
|     | 한서항공직업전문학교          | 항공기능인 양성과정               |
| 부산  | 부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제과제빵&바리스타 양성과정           |
| 인천  | 인천실용전문학교            | 네일아티스트 양성과정              |
|     | 인천직업전문학교            | 3D프린터기능사 양성과정            |
|     | HS평생교육원             | 반려동물전문가(애견미용사&팻헬퍼) 양성과정  |
| 광주  | (재)한국능력개발원 호남직업전문학교 | 외식프렌차이즈운영실무자 양성과정        |
| 대전  |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 로봇교당교육지도자 양성과정           |
| 경기  | 한주요리제과커피 직업전문학교     | 디저트&바리스타 양성과정            |
|     | 남양주직업전문학교           | 외식조리사 양성과정               |
| 충남  | 동천안직업전문학교           | 헤어아티스트 양성과정              |
| 경북  | 영천제일직업전문학교          | 웹편집디자이너 양성과정             |



## 주거지원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계층              |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
|-----------------|---------------------------------------------------------------------------------------------------------------------------------------------------------------------|-------------------------------------------------------------------------------------------------------------------------|
|                 | 일반 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br>•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대학 예정인 사람<br>•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중 뒤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br>(자산) 본인 총자산 7,2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br>•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br>•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br>(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br>•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br>•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br>(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br>(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 기준 219만 4,331원) 이하<br>(자산)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

| 계층                      |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
|-------------------------|-------------------------------------------------------------------------------------------------------------------------------------------------------|-------------------------------------------------------------------------------------------------------------|
|                         | 일반 사항                                                                                                                                                 | 소득 및 자산                                                                                                     |
| 산단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br>(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창업인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br>(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br>(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br>•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br>•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br>(자산) 세대 내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준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2.시행)
-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3인 기준) 624만 520원, 120%(3인 기준) 748만 8,624원
-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공급비율: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지원)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m<sup>2</sup>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 4. 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 자주 하는 질문

#####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는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단, 세대원을 거느리는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 충족 필요)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자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주거지원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
| 일반<br>저소득층<br>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br>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br>총자산 2억 1,500만 원 이하,<br>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청년<br>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br>(대학생, 취업생, 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br>(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 신혼부부<br>매입임대 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br>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br>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br>(6세 이하 자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br>(맞벌이 100%) 이하<br>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br>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신혼부부<br>매입임대 II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br>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br>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br>(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br>(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 다자녀<br>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br>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br>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br>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고령자형<br>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br>만 65세 이상 고령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br>2억 1,5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12만 260원,  
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24만 520원, 120% 748만 8,624원

## 2. 내용

매입임대사업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 구분              | 지원내용                               |
|-----------------|------------------------------------|
| 일반 저소득층<br>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
| 신혼부부 매입임대 I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
| 다자녀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 고령자형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 3.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폭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 주거지원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
| 일반 저소득층<br>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 신혼부부<br>전세임대 I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신혼부부<br>전세임대 II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다자녀<br>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2억 9,200만 원, 자동차 2,497만 원 이하 |
| 소년소녀가정 등<br>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취탁, 일반가정취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12만 260원, 70% 436만 8,364원, 90% 561만 6,468원, 100% 624만 520원, 120% 748만 8,624원

## 2.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1인 가구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 3.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구분            | 지원내용                                                                                                                                                                                                                                                                                                                      |
|---------------|---------------------------------------------------------------------------------------------------------------------------------------------------------------------------------------------------------------------------------------------------------------------------------------------------------------------------|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1,000만 원, 광역시 최대 8,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
| 청년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br>-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 원(3순위)<br>-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하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br>-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 신혼부부 전세임대 I   |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br>-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br>-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하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br><div>지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에서 1억 3,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li> <li>임대보증금 675만 원, 월임대료 21만 원 수준</li> </ul> </div> |
| 신혼부부 전세임대 II  | 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3,000만 원<br>-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br>-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하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br><div>지원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li> <li>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li> </ul> </div>          |
| 다자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br>-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br>- 마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 원씩 대출한도 상향                                                                                                                                                                                  |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만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초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br>※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

- #### 4.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 5.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마이홈 ☎1600-1004
  - 지방도시공사



## 주거 대출

##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 #### 1.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4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 ####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 연 1.85~2.40%(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55%~2.10%)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 4. 문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 28

### 주거 대출 보증자리론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29

### 주거 대출 버팀목 대출 보증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내용
  - 전세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3. 방법 주택도시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30

### 주거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 (연 1.8~2.4%,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 ※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8,000만 원(수도권 2억 2,000만 원)
3. 방법
  - 주택도시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 31

## 주거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 시)

-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음·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우대형                                                                                                                                                                                                                                                     | 일반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li> <li>■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li> <li>■ 희망키움통장 가입자</li> <li>■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li> <li>■ 주거급여 수급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br/>※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li> </ul> |

-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0%, 일반형 2.0%)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 3. 방법** ■ 주택도시보증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4. 문의** ■ 주택도시보증기금 ☎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 32

## 주거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1. 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 2. 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보증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 단일 요율)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NH농협)에 방문 신청
-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 33

## 주거 대출 전세자금 보증

- 1.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최저 보증료 연 0.05%, 보증금에 따라 달라짐)
-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 은행
-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www.hf.go.kr



## 생활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구분    | 지원대상                                                                                                                                                                                                                                                                                                                                                                                                                                                                                                                                     |
|-------|------------------------------------------------------------------------------------------------------------------------------------------------------------------------------------------------------------------------------------------------------------------------------------------------------------------------------------------------------------------------------------------------------------------------------------------------------------------------------------------------------------------------------------------|
| 위기 사유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br>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br>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br>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br>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br>⑥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br>⑦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br>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br>-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br>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br>(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7만 873원, 4인 기준 365만 7,218원) 이하                                                                                                                                                                                                                                                                                                                                                                                                                                                                                       |
| 재산    |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br>•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 2.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 주<br>급<br>여 | 생계<br>1개월 생계유지비<br>(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br>(4인 기준) 126만 6,900원 | 최대 6회 |
|             | 의료<br>각종 검사, 치료 등<br>의료서비스 지원<br>(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 원 이내                              | 최대 2회 |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 주<br>급<br>여      | 주거<br>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br>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br>지급 (대도시, 4인 기준)<br>64만 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                  | 사회복지<br>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br>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br>(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
| 부<br>가<br>급<br>여 |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초등학생 22만 1,600원<br>중학생 35만 2,700원<br>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br>수업료·입학금 |
|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br>연료비 지원                                | 월 9만 8,000원                                                       |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 원<br>(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 원                                                             |
|                  | 전기<br>요금                            | 단전 시 연계된<br>전기료 지원                                   | 50만 원 이내                                                          |
|                  | 민간 기관·<br>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br>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br>없음                                                        |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 생활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1. 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2. 내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생활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 1.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
- 2. 내용**
  -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동행지원 등 현장상담 서비스 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 지원
  -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임시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제공
- 3. 방법** 여성긴급전화, 내방·방문, 사이버상담을 통한 위기상담 →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서비스 제공 → 관련기관 연계조치
- 4.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http://www.women1366.kr))



## 건강지원 건강보험제도

###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2. 내용

|                    |                                                                                                                                                                                                                                            |
|--------------------|--------------------------------------------------------------------------------------------------------------------------------------------------------------------------------------------------------------------------------------------|
| 요양<br>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
| 요양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li> <li>■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발생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li> <li>■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li> </ul> |
|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br>-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67p)                                                                                                                                                                                      |
| 임산·출산<br>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6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br>(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 20만 원 추가 지급)<br>-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 책자 87p)                                                                                                                                      |
| 장애인<br>보조기기<br>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알려드립니다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건강지원 국가건강검진제도

### 1. 대상

| 구분         | 지원대상                                                                                                                                                                                                                                                                                                                                                                                                                        |
|------------|-----------------------------------------------------------------------------------------------------------------------------------------------------------------------------------------------------------------------------------------------------------------------------------------------------------------------------------------------------------------------------------------------------------------------------|
| 일반<br>건강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li> <li>■ 의료급여수급자 :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br/>(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li> </ul>                                                                                                                                                                                                                                                        |
| 암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li> <li>■ 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br/>*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li> <li>■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li> <li>■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li> <li>■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li> <li>■ 폐암 : 만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br/>*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li> </ul> |

## 2. 내용

| 구분         | 목표 질환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br>건강검진 | <div>■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div> <div>■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div>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성·연령별 검사항목</th><th>실시시기</th></tr><tr><td>총콜레스테롤</td><td rowspan="4">남성 만 24세 이상,<br/>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td></tr><tr><td>HDL콜레스테롤</td></tr><tr><td>트리글리세라이드</td></tr><tr><td>LDL 콜레스테롤</td></tr><tr><td>B형간염</td><td>만 40세</td></tr><tr><td>골밀도검사</td><td>만 54, 66세(여성)</td></tr><tr><td>인지기능장애</td><td>만 66세 이상 2년 1회</td></tr><tr><td>정신건강검사(우울증)</td><td>만 20, 30, 40, 50, 60, 70세<br/>(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td></tr><tr><td>생활습관평가</td><td>만 40, 50, 60, 70세</td></tr><tr><td>노인신체기능</td><td>만 66, 70, 80세</td></tr><tr><td>치면세균막검사</td><td>만 40세</td></tr></table> | 성·연령별 검사항목                                           | 실시시기 | 총콜레스테롤 | 남성 만 24세 이상,<br>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 | B형간염 | 만 40세 | 골밀도검사 | 만 54, 66세(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1회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br>(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 | 만 66, 70,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            | 성·연령별 검사항목                                                                                                                                                                                                                                                                                                                                                                                                                                                                                                                                                                              | 실시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총콜레스테롤                                                                                                                                                                                                                                                                                                                                                                                                                                                                                                                                                                                  | 남성 만 24세 이상,<br>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        |                                  |          |          |           |      |       |       |               |        |                |             |                                                      |        |                   |        |               |         |       |
|            | HDL콜레스테롤                                                                                                                                                                                                                                                                                                                                                                                                                                                                                                                                                                                |                                                      |      |        |                                  |          |          |           |      |       |       |               |        |                |             |                                                      |        |                   |        |               |         |       |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        |                                  |          |          |           |      |       |       |               |        |                |             |                                                      |        |                   |        |               |         |       |
|            | LDL 콜레스테롤                                                                                                                                                                                                                                                                                                                                                                                                                                                                                                                                                                               |                                                      |      |        |                                  |          |          |           |      |       |       |               |        |                |             |                                                      |        |                   |        |               |         |       |
|            | B형간염                                                                                                                                                                                                                                                                                                                                                                                                                                                                                                                                                                                    | 만 40세                                                |      |        |                                  |          |          |           |      |       |       |               |        |                |             |                                                      |        |                   |        |               |         |       |
|            | 골밀도검사                                                                                                                                                                                                                                                                                                                                                                                                                                                                                                                                                                                   | 만 54, 66세(여성)                                        |      |        |                                  |          |          |           |      |       |       |               |        |                |             |                                                      |        |                   |        |               |         |       |
|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1회                                       |      |        |                                  |          |          |           |      |       |       |               |        |                |             |                                                      |        |                   |        |               |         |       |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br>(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                                  |          |          |           |      |       |       |               |        |                |             |                                                      |        |                   |        |               |         |       |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신체기능                                                                                                                                                                                                                                                                                                                                                                                                                                                                                                                                                                                  | 만 66, 70, 80세                                        |      |        |                                  |          |          |           |      |       |       |               |        |                |             |                                                      |        |                   |        |               |         |       |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      |        |                                  |          |          |           |      |       |       |               |        |                |             |                                                      |        |                   |        |               |         |       |
| 암검진        | <div>■ 위암 :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div> <div>■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div> <div>■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조영검사 선택적 시행)</div> <div>■ 유방암 : 유방촬영술</div> <div>■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div> <div>■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div>                                                                                                                                                                                                                                                                                                          |                                                      |      |        |                                  |          |          |           |      |       |       |               |        |                |             |                                                      |        |                   |        |               |         |       |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1월 건강보험료납부액(고지액)이 신청연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6대암(위, 간, 대장, 자궁경부, 폐, 유방) 환자(‘21년 6월 한)
  - ※ 국가암검진 수검이력 확인(폐암 제외)
  -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만 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

### 2. 내용

-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간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 최대 220만 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 :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21년 6월 한)
  - 폐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 건강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 1. 대상** 지역 주민
-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4. 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 자주 하는 질문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 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마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금융지원 법률구조제도

- 1.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09만 5,0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731만 4,000원) 이하 농·어업인
- 2. 내용**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 중위소득 기준 | 대상자구분                | 소송비용   |       |
|---------|----------------------|--------|-------|
|         |                      | 변호사 보수 | 소송 비용 |
| 125% 이하 | 국민                   | 유료     | 유료    |
|         |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 무료     | 무료    |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무료     | 유료    |
|         | 전신남북자가족              | 무료     | 무료    |
|         | 영세담배소매인              |        |       |
|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        |       |
|         | 미혼부                  |        |       |
|         | 소상공인                 |        |       |
|         | 북한이탈주민               |        |       |
|         | 범죄피해자(재산)            |        |       |
|         | 소액임차인                |        |       |
|         | 국가유공자                |        |       |
|         | 보호보상대상자              |        |       |
|         | 독립유공자                |        |       |
|         | 5·18민주유공자            |        |       |
|         | 참전유공자                |        |       |
|         | 고엽제후유익증, 2세환자        |        |       |
|         | 특수임무유공자              |        |       |
|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학교폭력피해자              |        |       |
|         | 경찰·소방공무원             |        |       |
|         | 예술인                  |        |       |
|         | 재도전기업인               |        |       |
|         | 국내거주 외국인             |        |       |
|         | 범죄피해자(신체)            |        |       |

|         |                       |    |    |
|---------|-----------------------|----|----|
| 125%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무료 | 무료 |
|         |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    |    |
|         |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    |    |
|         | 한부모가족(취약계층)           |    |    |
|         | 가족관계미등록자              |    |    |
|         | 소년소녀가장                |    |    |
|         | 보호대상아동                |    |    |
|         | 한부모가족(양육, 인지)         |    |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         |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    |    |
| 150%이하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    |    |
|         |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    |    |
| 소득기준 예외 |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    |    |
|         | 농업인·어업인               |    |    |
|         | 차상위계층                 |    |    |
|         |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    |    |
|         |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    |    |
|         |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    |    |
|         |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    |    |
|         | 불법사금융피해자              |    |    |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

#### 알려드립니다

#####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상가건을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법률·금융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 대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햇살론17,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한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맺은 금융회사의 180여 개 대출상품의 한도 및 금리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선택
- 방법**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ra.or.kr)에서 신청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ra.or.kr)
  - 맞춤대출 앱(앱스토어에서 '맞춤대출' 검색)

#### 알려드립니다

##### 맞춤대출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①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 ②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알맞은 최적의 대출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맞춤대출서비스 이용 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별 0.5~3.0%p 우대금리 적용(상품별 상이)
- ④ 대출상품의 단순 안내가 아닌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 심사시스템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한도·금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43

## 법률·금융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 대상** 고용부가 지원하는 3주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소득요건 없음)
- 내용** 월 단위 200만 원(1인당 2,000만 원) 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월 단위 300만 원(1인당 총 3,000만 원) 한도
-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oomwel.or.kr)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대상 : 아래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신청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용도와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44

## 법률·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를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on the left page,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on the right page,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펴낸곳**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본부

범부처정보관리부

**인쇄** 2021년 4월

**디자인** 디자인영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921-10

※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